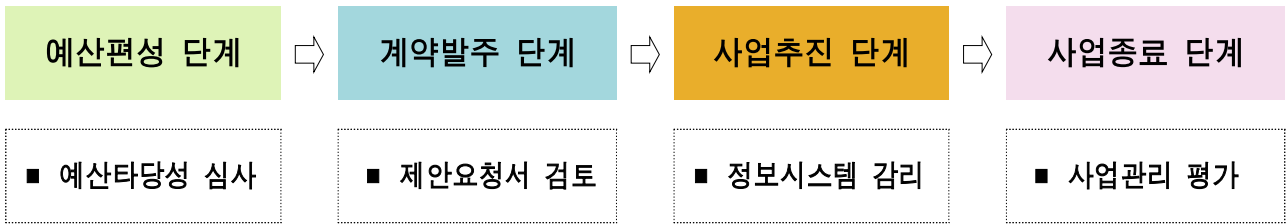


서울시 정보화사업 추진 절차 및 사업 유형별 준수(유의)사항

I 사업관리 공통사항

1] 서울시 정보화사업 추진 주요 절차 준수



1. 예산타당성 심사 : <예산 편성 시> 기관 관점의 정보화 예산편성의 타당성 심사

- 대상기관 : 시 본청 및 사업소, 투자·출연기관
- 심사대상 : 예산이 수반되는 정보화사업(※투자출연기관 자체수익 예산: 1억원 이상 신규 사업)
- 심사내용 : 중복성 여부, 자원의 재활용 및 통합가능성, 예산의 적정성 등
- 심사신청 : 예산편성 전(추경, 예산전용 및 이용 등 포함)

2.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절차 : <사업 발주 전> 중앙부처 및 타 행정기관 간의 중복성 심사

- 대상기관 : 전 행정기관(지방자치단체)포함(※심사기관:행정자치부)
- 심사대상 : 예산이 소요되는 정보화사업

※ 제외대상(지방자치단체 정보화사업 사전협의지침(행정자치부 고시) 제4조)
기준사업비(시도:5,000만원, 시군구 2,000만원) 이하의 사업, 단순 H/W 및 S/W 구매사업, 정보통신 공사사업, 단순 유지보수 및 디자인개선 사업, 홍보용 홈페이지 구축 등

- 관련 사이트 : www.geap.go.kr(등록 후 정보기획담당관으로 심사의뢰)
- 유의사항 : 사업 발주 전 최소 1개월 이전에 심사 신청(소요기간 : 1개월)
- 관련근거 : 지방자치단체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지침(행정자치부 고시)

3. 제안요청서 검토 : <사업 발주 시> 발주문서의 법적·기술적 적정성 검토

- 대상기관 : 시 본청 및 사업소, 투자·출연기관
- 검토대상 : 제안요청서, 과업지시서 등 발주서류

- 제안요청서 검토 : 시 본청 및 사업소, 투자·출연기관
- 과업지시서 검토 : 시 본청 및 사업소
- ※ 단, 2천만원이하 소액 사업은 검토제외

- 검토내용 : 계약 및 공공SW 관련 규정적용, IT기술 표준 적용 여부 등
- 검토신청 : 제안요청서, 과업지시서 등 작성 직후(발주 전)

4. 정보시스템 감리 : <사업 추진 시> IT기술 및 프로젝트 진단을 통한 위험통제

- 대상기관 : 시 본청 및 사업소
- 감리대상 : 개발비 2억 이상 사업 중 주요사업
- 추진방법 : 「정보시스템 감리기준」에 의한 정보시스템 감리법인 선정 실시

5. 사업관리 평가 : <사업 종료 시> 정보화 사업관리 표준을 기준으로 최종 사업점검 유도

- 대상기관 : 시 본청 및 사업소
- 평가대상 : 제안요청서(과업지시서) 검토대상 사업
- 평가내용 : 시 정보화추진 표준절차, 표준 프로젝트추진 방법론 등 준수정도

② 서울시 정보화사업 추진 관련 시스템

1. 서울시 정보화사업 관리 시스템

- 주요기능 : 정보화사업 추진절차 이행, 사업관리, 사업평가 등
- 접속방법 : 행정포털 > 업무데스크 > 정보통신 >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
- 모든 정보화사업 추진 시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한 절차이행 및 사업관리 의무
- 관련문의 : 정보기획담당관 IT투자심사팀(※콜센터 : 2133-1234)

2. 서울시 EA관리시스템

- 주요기능 : 서울시 정보화 현황 관리
- 관리정보 : 정보화계획, 정보화사업, 정보시스템, 정보자원(HW,SW)현황 등
- 접속방법 : 행정포털 > 업무데스크 > 정보통신 > EA관리시스템
- 유의사항 : 모든 정보화사업 종료 시 관련정보 현행화 의무
- 관련문의 : 정보기획담당관 IT투자심사팀(※콜센터 : 2133-1234)

③ 서울시 정보화사업 추진 관련 규정(관련 규정 및 가이드)

<서울시 정보화사업 추진 절차 관련 규정>

-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 절차에 관한 규칙
- 서울시 정보화사업 관리지침
- 서울시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 및 활용 지침

<서울시 정보화사업 추진 방법론>

- 서울시 프로젝트관리 방법론
- 서울시 소프트웨어 개발 및 유지보수 방법론

<서울시 정보화사업 계약체결을 위한 발주관련 지침, 가이드>

- 서울시 정보화사업 제안서 평가방법 세부기준
- 서울시 정보화사업 제안요청서 표준 샘플
- 서울시 정보화사업 과업지시서 표준 샘플

TIP <정보화사업 관련 규정, 지침 등 다운로드 >
 •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> 커뮤니티 > 자료실



II

홈페이지 관련 사업

1] 공통의견 (※정보기획담당관 협의)

- 홈페이지 관련 규정 및 표준 준수하여 구축
- ‘웹사이트 총량제 운영 및 주소체계 정비’에 의해 도메인 신청(오픈심의)전 사전협의 필요
- 홈페이지 구축 및 리뉴얼시 서울시 공통프로그램 공동 활용은 반드시 사전협의 후 적용

〈서울시 홈페이지 공통프로그램 활용〉

- 서울시대표홈페이지에서 통합검색 및 홈페이지 자체 검색이 가능하도록 개발(서울시 통합 검색엔진 공동활용)
- 서울시 통합게시판 적용
- 방문자 이용현황 분석을 위한 ‘서울시 통합웹(앱)로그 분석시스템’ 로그 발행 설정
 - 정보기획담당관 주관 「2016년 서울시 로그분석시스템 신규 도입」 설치 시 로그발행 가이드에 따라 모든 콘텐츠별 일괄 로그 발행 작업 실시
 - 콘텐츠 추가 생성 시 서비스 개시 전에 반드시 로그발행 여부 확인
- SNS 연동시 서울시 SNS연동 API 공동 활용 우선 검토
- 서울시 홈페이지 통합회원 연계 시 가능 여부 사전협의(연계시 SSO 라이선스 구매 예산 확보)

- 홈페이지 오픈 15일 전 ‘오픈심의’ 절차 이행
 - 웹 접근성, 웹 호환성 준수여부, 웹 취약점 적합여부, 보안성 검토 이행 여부
 - 서울시 웹 서비스 정책 및 기술 가이드 준수 여부 등 홈페이지 구축·운영관련 기술사항 등 심의
- 서울시 홈페이지와의 연계성 확보를 위해 ‘서울시 공통 GNB’ 설치
- 브라우저 호환성을 위하여 Active-X가 포함되지 않도록 시스템 개발
- 홈페이지에서 사용하는 이미지, 폰트 등에 대한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용권 확인 후 적용
- 웹접근성 준수여부는 종료단계에서 전문가 점검을 통해 장애인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(필요시 별도예산 확보)
- 외국어사이트 구축 및 리뉴얼 시 콘텐츠 중복성 검토, 사이트 운영정책에 대해 시 대표 외국어홈페이지 운영부서(도시브랜드담당관)와 사전 협의를 거친 후 진행

② 웹 콘텐츠 접근성 및 표준성(사업 추진 시 준수사항)

1. 웹 접근성 준수

- 미래창조과학부 웹 접근성 품질마크 인증 기준에 맞게 구축하여야 함
 - 정보화 진흥원 웹 접근성 연구소(<http://www.wah.or.kr>)의 웹콘텐츠 제작기법 참고
 - ‘국가표준(KICS)인 인터넷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.1’ 준수
- 사업완료 시 웹 접근성 준수 증빙서류 제출
 - 객관적 체크리스트 : K-WAH 최신버전에 의한 점검 결과
 - ※ 자동 점검툴 설정화면(3depth,100페이지 이상 설정) 및 점검결과(오류수 0, 준수율100%) 캡처 제출
 - 주관적 체크리스트 : 웹 접근성 진단 체크리스트 결과서(※제출양식 별도제공)
 - ※ 유지보수 사업인 경우 정기적(일정협의, 최소 반기별)으로 제출, 사이트 수정 보완 시(수시)에도 제출

(▷ 또는 웹접근성 인증마크 획득, 전문기관 점검결과 제출 가능)

2. 웹표준 준수

- 웹표준 문법을 준수하여 구축하여야 함
 - W3C Markup Validation (<http://validator.w3.org>) 문법검사 통과
 - W3C CSS Validation (<http://jigsaw.w3.org/css-validator>) 문법검사 통과
- 웹호환성 확보로 크로스브라우저를 지원하여야 함
 - 동작호환성 확보, 레이아웃호환성 확보, 플러그인호환성 확보
 - 5종 브라우저(IE9이상, 파이어폭스, 오페라, 사파리, 크롬) 지원하여야 함
- 사업완료시 웹호환성 준수 증빙서류 제출
 - W3C Markup Validator, CSS Validator, 크로스브라우저 지원 진단 체크리스트

③ 홈페이지 표준 지침(관련 규정 및 가이드)

- 행정·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·운영 가이드 (행정자치부)
-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.1(방송통신표준)
-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(행정자치부고시)
-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(한국인터넷진흥원)
- 웹서버 구축 보안점검 가이드(한국인터넷진흥원)
- 홈페이지 개발 보안 안내서(한국인터넷진흥원)
- 인터넷 이용환경 개선을 위한 기술안내서(한국인터넷진흥원)
- 홈페이지 SW(웹) 개발 보안가이드(한국인터넷진흥원)
- 서울특별시 웹서비스 정책 가이드라인
- 서울특별시 웹서비스 기술 가이드라인
- 서울특별시 개인정보보호 기본 지침

Ⅲ

내부(업무용)행정시스템 관련 사업

1 공통의견 (※정보시스템담당관 협의)

- 행정포털에 연계(사용자 정보 연계, SSO 등)를 하기 위해서는 행정포털 연계인증 표준방식으로 구현 필요(정보시스템담당관 협의)
- 행정포털 통합검색에서 연계된 업무시스템은 재구축 또는 업무 변경시 변경된 정보를 제공
- 행정정보시스템(데이터센터 내 서버 설치시에 한함)에서 메일 발송 시 개별구축 사용이 불가하며 서울시 메일릴레이 시스템(API) 활용
- 행정포털시스템 키값에서 주민등록번호가 제거됨에 따라, 기존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연계했던 각 시스템별 사용자 정보 연계방식 및 자료변환에 대한 비용발생 여부 검토가 필요함(※주민번호 일부 또는 주민번호를 근간으로 하는 연계키 포함)
- 전자문서시스템과 연계시 표준연계방식으로 연계가 되도록 구현하며 연계 전 연계가능여부를 확인한 후 사업추진.
- 시도행정정보시스템과 타 시스템간 정보연계시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연계 표준가이드를 참고하여 연계절차가 진행(정보시스템담당관 사전협의)

Ⅳ

공간정보(지도포함) 관련 사업

1 공통의견 (※공간정보담당관 협의)

- 장소와 관련 있는 현황물 관리시스템 구축시, 서울형 지도태깅을 공동 활용(공간정보담당관 협의)
- 앱 서비스 개발시 간단한 위치기반(지도서비스)기능을 제공하는(예약 등 제외) 경우 스마트서울맵 공동 활용(공간정보담당관 협의)
- 다국어지도는 공간정보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다국어지도를 공동 활용(공간정보담당관 협의)
- 항공사진, 위성사진, 3차원 지도(실내외) 등은 공간정보담당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공동 활용(공간정보담당관 협의)
- GIS DB는 공간정보표준분류체계(TTAK.KO-10.0177/R4), 개방형 지리정보 표준민간기구(OGC), 표준규격 [한국산업규격(KS), 정보통신 표준(KICS), 정보통신단체표준(TTA)] 준수하고 공간데이터웨어하우스(SDW)에서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구축(공간정보담당관 협의)

① 공통의견 (※정보기획담당관(인터넷정책팀) 협의)

- 2015년부터 구축하는 모바일 서비스(앱/웹)은 “서울모바일플랫폼 통합 개발환경”을 기반으로 구축하여야 하므로 세부사업계획 수립 시 정보기획 담당관 모바일사업팀과 협의 후 추진
- 모바일 전자정부서비스 관리 지침(2014.11.25.)에 따라 대민 모바일 행정서비스에 대한 보안구축 및 보안검증 이행 할 것
- 모바일서비스 중 신규, 기능개선 및 디자인 리뉴얼 범위가 전체서비스인 경우 서울모바일플랫폼의 통합개발환경을 통해 사업 추진(정보기획담당관 모바일사업팀과 협의)

② 모바일 웹 도메인 신청 및 검증방법

- 모바일 전용 도메인명 신청/심사
 - 「모바일 서비스 등록 신청서」 → 업무관리시스템 서식[A-138] 작성하여 정보기획 담당관으로 공문 발송 (※모바일웹 선택후, 도메인명 기재)
 - 중복성 검토 및 보안성 검토 등 도메인명 심사후 통보
- 모바일웹 검증
 - 「대민용 모바일서비스 길라잡이」 (모바일 전자정부 지원센터, '14.5)에서 제시한 검증 체크리스트에 따라 각 항목별 검증결과를 첨부하여 송부할 것

③ 모바일관련 표준 지침

- 모바일 사업 표준 지침 준수
 - 「서울시 대시민 모바일서비스 개발·운영 가이드라인」
 - 「서울시 대시민 모바일서비스 UI/UX 가이드라인」
 - 「모바일 전자정부서비스 관리 지침」
 - 「대국민 모바일서비스 구축 가이드라인」
 - 「모바일 서비스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지침」
 - 「모바일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가이드라인」
 - 「모바일 대국민 전자정부서비스 앱 가이드라인」

○ 정보보호 지침 준수

- 「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가이드라인」
- 「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 가이드라인」

○ 모바일 접근성 지침 준수

- 「모바일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」

○ 단말 호환성 확보

- 다양한 스마트 기기(스마트패드 등) 환경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호환성 또는 운용성을 고려하여 개발
- 특히 Big 3(삼성, LG, 아이폰) 제조회사의 스마트폰 중 최근 1~2년내 출시된 스마트폰/패드는 지원 필수

○ 모바일서비스 계획 수립시 (모바일 전자정부서비스 관리 지침 5조)

-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구축 가이드라인
- 모바일 전자정부 공통기반 및 지원센터 활용 가이드라인
-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지침
-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
-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

○ 모바일서비스 구축 시 (모바일 전자정부서비스 관리 지침6조)

-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구축 가이드라인
- 모바일 전자정부 공통기반 및 지원센터 활용 가이드라인
-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지침 및 가이드라인
-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·운영 지침
-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
-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
- 전자정부 모바일 표준프레임워크 포털(m.egovframe.go.kr)
- 대민 모바일 보안공통기반 활용 가이드라인
- 행정기관 도메인 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

1 공통의견 (※ 통계데이터담당관)**1. 데이터 관리(표준, 품질) 측면**

- DB설계 시 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표준 준수
 - 데이터품질관리시스템을 통해 데이터 품질진단 요청(통계데이터담당관 협의)하거나 데이터의 정확도를 직접 진단
 - 개인정보, 중요정보에 대해서는 암호화하여 DB에 저장될 수 있도록 조치
- 행정정보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등 준수

2. 데이터 개방 측면

-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('13.10.31 시행)로 공공데이터 제공(개방)은 공공기관의 선택이 아닌 필수
- 사업 발주 시 과업 내용에 “공공데이터 개발을 위한 업무 지원” 포함
- 시스템 구축·운영으로 생성될 공공데이터의 열린데이터 광장을 통한 데이터 개방을 위해 공공데이터의 최신성, 정확성, 상호연계성을 고려하여 시스템을 구축
- 공공데이터 보유 목록을 생성하거나 취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제출서식에 의거 통계데이터담당관으로 제출

3. 빅데이터 관련 사항

- 데이터 분석관련 사업은 통계데이터담당관 빅데이터기획팀과 사전 협의

① 서버 등 HW 관련사항

- 서버에 대한 장애 대비 안전성 확보를 위해 서버 CPU, 디스크, 각종 연결 네트워크 카드, 전원, 팬 등 최대한 이중화 실시 권고
- 시스템 안정성과 가용성을 위해 서버의 OS영역과 자료 영역을 분리하여 저장하고 미러링 또는 RAID 구성 권장
- 시스템 운영의 안정성 강화를 위해 CPU, 메모리, 전원, 네트워크 카드, 디스크 등 주요 부품의 이중화 권고
- 데이터 및 O/S 복구 위한 백업 S/W 구매 및 백업정책 수립

② 상용SW 관련사항**1. 윈도우즈 서버 도입 시 고려사항**

- 내부시스템인 경우 해당 시스템 사용자수 만큼 윈도우서버 UserCAL 구매, 홈페이지 등 불특정다수에게 서비스를 하는 경우 External Connect 라이선스 구매 필요

⇒ 윈도우즈 서버 cal라이선스 관련 문의 :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공사업PC관리팀

2. MS-SQL DB도입 시 고려사항

- 사용자수를 파악하여 Processor License 또는 SQL User CAL 구매 포함 필요

〈참고사항〉

- ※ DB, OS 등 구입 시 공개SW 구매 가능(적용 가능) 여부 사전검토 후 가능 시 공개SW 도입 권장

1. 네트워크 장비 관련

- 네트워크 장비 설치 시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제34조(네트워크장비 보안 관리) 준수
- 네트워크 장비는 사전 보안적합성 검증 받을수 있도록 조치
- 조달청 고시 2014-12호('14.5.23) : 서버 5년, 스위치 6년, 라우터 8년 등
- 통신장비의 교체 및 추가 도입 시 기존에 설치된 장비와의 호환성 및 안정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실시
 - 설치 작업 시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이중화, 장비임대 등의 대책 마련한 후 진행 권고

2. 네트워크 망 관련

-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제33조(업무망 보안관리) 준수

3. CCTV 관련

-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59조(CCTV 시스템 보안관리) 및 서울특별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·관리 방침 준수

4. 개인정보 영향평가

-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5조에 의거 개인정보영향평가 대상
- 개인정보 관리실태 현장점검 지침 이행
- ※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(www.privacy.go.kr) > 사업자 > 개인정보 영향평가

5. 보안장비의 도입

- 시스템보호를 위한 방화벽, IPS, DB암호화 솔루션 등은 반드시 CC인증을 통과한 적합한 제품을 도입